[별지 제9-1호 서식]

해 외 직 접 투 자 신 고 서(보고서)

처리기간

신고인(보고인)	상 호		사 업 자 등 록 번 호	
			법 인 등 록 번 호	
	대 표 자	(인)	주 민 등 록 번 호	
	소 재 지	전화번호 :		
	업 종			
해외직접투자내용	투 자 국 명		소 재 지	
	투 자 방 법		자 금 조 달	
	투 자 업 종		주 요 제 품	
	투 자 금 액		출 자 금 액	
	투 자 비 율		결 산 월	
	투 자 목 적		투 자 유 형	
	현지법인명 (영 문)	(자본금 :)		

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(보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외국환은행의 장 귀하

위와 같이 신고(보고)되었음을 확인함	신 고 번 호	
	신 고 금 액	
	유 효 기 간	

피신고(보고)기관 : 외국환은행의 장

210㎜×297㎜

〈첨부서류〉 1. 사업계획서(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포함)
2. 합작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계약서
3.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금전의 대여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에는 금전대차계약서

※ 업종은 국가데이터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코드(5자리) 및 업종명을 기재
※ 출자금액란에는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경우 액면가액을 기재

유 의 사 항

1. 본 신고 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 투자(송금)하되 투자(송금)후 즉시 동 사실을 관계증빙 첨부하여 당행에 보고하여야 함

2. 본 신고(보고)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9-9조제1항제8호에 의거 변경사

유가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에 피신고(보고)기관에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보고를 하여야 함. 다만,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에게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
3.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9-9조에 의거 다음의 보고서를 당행에 제출할 것
   (1) 외화증권(채권)취득보고서(현지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 포함)
   :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
   (2) 연간 사업실적보고서(투자금액 합계가 미화 300만불 초과인 경우에 한함)
   :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

4. 결산 후 배당금은 전액 현금으로 국내로 회수하거나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할 수 있음

5.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아야 함

6. 본 신고 후 「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」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로 규제될 경우 또는 조세체납의 경우 신고금액중 미송금액은 그 효력을 상실함

7. 본 신고서 상의 '투자목적'과 '투자유형'은 사업계획서 상의 '투자목적' 및 '투자유형'과 동일하게 기입함